

# 電氣用品 生産業体 協議会 構成運營

— 自律的 品質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協議会 —

本会 品質管理課

本業에서는 工業振興庁과 합동으로 소비자 보호의 일환적으로 中小企業에서 生産하는 電氣家庭用品 중 소비자들로 부터 品質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연탄가스배출기 外 15個 品目에 대하여 同種品目 生産業体 스스로가 상호간의 有機的인 협조체제를 이룩하여 不法不良 製品の 流通을 방지하고, 제품의 品質向上을 도모하고자 品目別 生産業体協議会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同協議会是 業体 상호간의 情報交流와 아울러 協議된 內容과 問題點을 本会에서 총합하여 工業振興庁에 건의하고 工業振興庁은 건의된 內容을 分析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事項은 즉시 처리하고, 制度的 연구가 必要되는 사항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이 協議会的 運營에 최

대의 지원을 할 것이다.

이는 業体 스스로가 不法不良製品 流通防止策을 강구하고, 技術情報를 迅速히 상호교환하여 主要 社内規格 作成方法을 導入하고 品質向上을 위한 問題點을 자발적으로 발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아울러 工業振興庁과 本会에서는 이 協議체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品質管理技法과 KS 規格化 추진 등을 촉진하여 나아갈 것이며, 이 制度가 효율적으로 運營되게 되면 來年度에는 점차 品目別 協議会 運營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래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品質 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協議会 開催日程 要約

品 名	日 程	場 所	備 考
가 스 排 出 器	82. 4. 7, 14:00	電子工業振興會	15個 業体參席(承認業体: 16個)
	82. 4. 10, 10:00	"	実務者會議
	82. 4. 16, 14:00	"	10個 業体參席
電 氣 장 관	82. 4. 9, 14:00	"	15個 業体參席(休止: 6)
	82. 4. 14, 14:00	"	17個 業体參席(承認業体: 21個)
TV 受像機, 電氣 冷蔵庫	82. 4. 21, 14:00	"	7個 業体 9名參席(承認業体: 10個)
電氣수, 電氣냄비, 電氣保温밥통, 電氣 주전자, 電氣후라이 팬	82. 4. 23, 10:00	"	19個 業体參席
電氣다리미, 電氣곤 로, 電氣스토브	82. 4. 26, 14:00	"	12個 業体參席
換 風 機	82. 5. 3, 14:00	"	9個 業体參席(承認業体: 23個)
모 발 전 조 기	82. 5. 7, 14:00	"	(承認業体: 23個)

品名	日程	場所	備者
電氣믹서	82. 5. 10, 14:00	〃	商去來秩序確立推進對象品目 (承認業體: 9個)
퓨우즈	82. 5. 12, 14:00	〃	商去來秩序確立推進對象品目 (承認業體: 21個)

## 2. 會議內容

- 生産業體 協議會 運營規程(案) 審議
- 各種 現況說明
  - 型式承認 現況, 事後管理 現況 및 主要不良 內容 等
  - 業體別 製品構造上 差異點
  - 製造業體 工場檢査 實施 結果 나타난 問題
- 相互 技術情報交換 誘導
  - 優秀業體 見學, 製品品質 比較 檢査 等
- 社內規格作成 및 活用方案을 간단히 說明: 社內規格作成方法 冊字發刊 配布
- 意識改革에 따른 商去來 秩序確立推進方向 說明

## 3. 品目別協議會 會長名單

目目	所屬	姓名	備考
가스排出器	(주) 새한電子 代表	이만화	
電氣장판	三五精密 代表	양건호	
TV, 電氣冷藏庫	(주)金星社 副社長	이희종	
電氣솔	} 大元電氣 산업(주) 代表	김명길	分科委員長: 신양전기 대표 우주전기산업사 대표 (주)마마전기 대표 선학알미늄(주) 대표 신진전기 대표
電氣냄비			
電氣保温밥통			
電氣주전자			
電氣후라이팬			
電氣다리미	} 극동전열공업사대표	이대섭	: 삼성전기공업사 대표 삼신전열공업사 대표 한국후지카공업(주) 대표
電氣곤로			
電氣스토브			
換風機	東建工業社 代表	김진만	
모발건조기	유닉스전자(주) 대표	이충구	
전기믹서	한일전기(주)	권태완	
퓨우즈	천흥전기공업(주)	정수천	

## 4. 向後計劃

- 協議會 會議는 2個月마다 開催함을 原則으로 함.
- 事後管理 結果 및 消費者 不滿申告 內容에 따른 不良要因에 對한 改善對策을 業體 스스로 當회에 提出토록 함.
- 同改善方案에 對한 實施事項을 수시로 確認할 것임.
- 協議會에서 提出된 健議事項을 分析檢討하여 措置할 것임.
- 運營実績이 優秀한 協議會에 對하여는 事後管理計劃時 工振庁에서 參照 配慮할 것임.

## 5. 運營規定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품목별 생산업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상호 협조를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불법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나아가 불법제품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용품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품목별 협의회) 제조사업 구분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둔다.

제 3 조(협의회의 구성)

- 1) 각 협의회의 회원은 제조업체별로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 2) 회원은 생산업체의 경영자급으로 하고, 생산업체에서 선정하며 협의회 회장이 위촉한다.
- 3)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 1인을 두되, 각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조(협의회의 회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 5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불법·불량제품 구축에 대한 대책 수립
- 기술정보의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사내규격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타개에 관한 사항
- 품질향상 및 개선 대책 수립
- 협의회의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제 6 조(협의회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또 결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협의회의 소집) 협의회는 협의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제 8 조(심 의)

- 1)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심의시의 회장은 협의회장이 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3) 협의회장 유고시는 의장을 회원이 호선하며 그 회원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4)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이외의 참고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 5) 회원이 동협의회에 불참하고 서면으로 그의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 조(간 사)

- 1) 협의회의 회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2) 간사는 협의회에 의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의보고) 협의회의 심의 결정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